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1. 8. 31  
행정건설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1년 8월 19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1년 8월 2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63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(2011년 8월 31일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기획예산과장 이 영 복

#### 가. 개정이유

동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1. 12. 31 로 한시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것임

#### 나. 주요내용

(1) 안 제1조에서는 2008. 1. 1일자로 「지방자치법」(법률 제

8435호)가 일부 개정되어 기금의 설치와 관련된 조문 중 “ 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” 가 “같은 법 제142조” 로 변경

(2) 안 제3조에서는 “구금고” 란 “ 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102조에 따라 2010. 9. 2일자로 제정된 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3조에 따라 ” 로 변경

(3) 안 부칙에서 “하되 존속기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” 를 삭제하고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” 를 추가하여 시행일 개정

### 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명금길)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「시행령」 제3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 하고 조문을 변경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와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사무처리규칙」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상으로도 저촉됨이 없어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-55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8. 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사유

- 가. 「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
- 나. 「지방자치법」 관련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여 기금설치의 법적 근거를 통일시키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기금의 설치에 관한 지방자치법 변경조문 적용(안 제1조)
- 나. 조례의 존속기한 삭제 및 기금의 존속기한 개정(부칙)
- 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상의 일부 용어 변경

## 3. 개정근거

- 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
- 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
- 3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5조 및 부칙

## 4. 개정조례안 : 따로붙임

## 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## 6. 기타사항

- 가. 입법예고 : 2011. 7. 28 ~ 8. 17
- 나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11. 08. 18)
- 다.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서울특별시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”라 하고,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 규정 및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와”로 하며, “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라”로 하고, “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관리기금(이하 “통합관리기금”이라 한다)”를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“통합관리기금”이라함은”을 ““통합관리기금”이란”으로 하고,

같은 조 제2호 중 ““여유자금”이라함은 구”를 ““여유자금”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”로 하고, “당해 회계연도 내”를 “해당 회계연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“구금고”라함은”을 ““구금고”란”으로 하고, “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3조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“기금운용관”이라함은”을 ““기금운용관”이란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“통합기금”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(이하 “통합관리기금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“존속기한은 시행일부터 5년”을 “존속기한은 5년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7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7조 중 “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과 동법시행령”을 “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과 같은 법 시행령”으로 한다.

조례 제621호 부칙 중 “하되, 존속기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”를 삭제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가 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 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·운영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관리기금(이하 “통합관리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,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서울특별시 마포구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와 --</u> ----- ----- ----- <u>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라 -----</u>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-----</u> ----- -----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“통합관리기금”이라함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.</li> <li>2. “여유자금”이라함은 구가 설치·운영하는 각종 기금이 당해 회계연도 내에 필요한 일상적인 운용자금과 목적수행을 위한 필요한 자금 등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.</li> <li>3. “구 금고”라함은 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.</li> </ol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“통합관리기금”이란 ----- ----- -----</li> <li>2. “여유자금”이란 <u>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-----</u> ----- <u>해당 회계연도-----</u> ----- -----</li> <li>3. “구 금고”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3조에 따라 ----- -----</li> </ol>

현행	개정안
<p>4. “기금운용관”이라 함은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기금 운용관을 말한다.</p>	<p>4. “기금운용관”이란 ----- ----- -----</p>
<p>제3조(통합관리기금의 설치) 구청장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·공급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을 설치한다.</p>	<p>제3조(통합관리기금의 설치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----- -----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(이하 “통합관리기금”이라 한다)-----</p>
<p>제5조(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,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통합관리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(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) ---- ----- ---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----- 존속기한은 5년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8조(예탁기간 및 이자율등)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.</p>	<p>제8조(예탁기간 및 이자율등) ① 제7조에 따른 ----- ----- -----</p>
<p>② (생략)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7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과 동법 시행령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</p>	<p>제17조(준용) ----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 ----- -----</p>